



2010. 2. 18. 시행

### ■ 개정사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주요내용

-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3조의2 신설)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별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함
- 주류제조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제조·출고정지처분 기간 3개월 이내로 규정(제12조)
- 전통주 육성 지원
  - 탁주, 약주, 전통주의 직매장 설치시 시설기준 면제(제17조)
  - 탁주, 약주 시설기준 완화(별표3)  
    담급(발효)조 :  $6k\ell \rightarrow 3k\ell$  이상, 제성조  $7.2k\ell \rightarrow 2k\ell$
- 면세주정 범위 확대(제36조 1항)
  - 식음용 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 → 식음용 외의 공업용
-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 신고일 단축(제57조 2항)
  - 주류출고예정일 15일전 → 1일전
- 자동계수기 사용 신고일 및 승인 기간 단축(제57조 2항)
  - 신고일 사용예정일 15일전 → 7일전
  - 승인 기간 신청일부터 10일이내 → 5일이내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조건 완화(제57조 5항)
  - 1년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 조건 삭제
- 맥주 및 과실주 제조시 과채류 첨가물 사용 허용(별표1)

2010. 7. 1. 시행

## ■ 개정사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등 5개 사항을 표시사항에 추가하고,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 주요내용

### ○ 주류의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제57조의2제2항 관련)

- 원산지 표시관련은 2011년말까지 주세법의 방법을 따르고 2012년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따름(원산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별첨자료

[별표 7]

### 주류의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제57조의2제2항 관련)

| 표시사항              | 표시기준  |
|-------------------|---|
| 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표시<br>1. 국산주류<br>가. 원료(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말하며, 주정과 원료용 주류를 포함한다)의 명칭 표시대상<br>1)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그 원료<br>2) 1)에 해당하는 원료를 포함하여 그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3 가지 이상의 원료<br>3) 주정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br>나. 원료의 함량 표시대상<br>가목의 표시대상 중 1)에 해당하는 원료<br>2. 수입주류<br>「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 |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1. 2010년 8월 4일까지<br>가. 국산주류<br>1) 표시대상<br>가)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생산 국가나 지역  |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   |

| 표시사항              | 표시기준  |
|-------------------|---|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 <p>나)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정 원료가 주된 원료가 아니더라도 그 원료의 생산국이나 지역 포함</p> <p>2) 생산국가의 판정<br/>「대외무역법」 제34조 준용</p> <p>3) 표시방법</p> <p>가) 국산 원료: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p> <p>나) 수입 원료: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가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li> <li>(2)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li> <li>(3)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li> </ul> <p>다)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명칭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 가능</li> <li>(2)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생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li> <li>(나)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용기 또는 상표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li> </ul> </li> <li>(3) (1) 및 (2)에 따라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 경우로서 그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폭이 15% 이하이면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 표시 가능</li> </ul> |

| 표시사항              | 표시기준   |
|-------------------|--|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 <p>나. 수입주류<br/>         「대외무역법」 제33조 준용</p> <p>2. 2010년 8월 5일 이후<b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준용</p> <p>1. 제조일자 표시방법<br/>         가. 연·월·(일)의 순서로 표시</p> <p>나. 제조번호(lot number)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p> <p>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인 택주, 약주 및 맥주는 제조일자 생략 가능</p> <p>2. 면세여부 표시대상 및 방법<br/>         가. 표시대상: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p> <p>나. 표시방법: 면세주류의 병마개와 상표를 면세되지 않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p> |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p>1. 표시대상<br/>         택주(살균택주는 제외한다), 약주(살균약주는 제외한다) 및 맥주</p> <p>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설정기준<br/>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고시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용</p> <p>3. 표시방법<br/>         “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시하거나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개월, 년)”로 표시</p>   |
|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 <p>1. 국산주류: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제조장의 소재지 대신 본사의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도 함께 표시</p> <p>2. 수입주류: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 물품의 제조자명을 표시</p>   |
| 첨가재료의 명칭          |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재료  |